

제426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4)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8)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9)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6)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9)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6)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2)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4)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7)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8)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3)

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4)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4)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8)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4)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4)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8)
  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5)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0)
  3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9)
  36.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6)
  3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9)
  39.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2)
  4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8)
- 

###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	5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5
o 간사(김용민·장동혁) 및 소위원장(김용민·장동혁·장경태·전현희) 인사 .....	5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8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4) .....	8
5.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0) .....	8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8) .....	8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9) .....	8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8) .....	8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9) .....	8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3) .....	8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6) .....	8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0) .....	8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4) .....	8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9) .....	8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4) .....	8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6)	8
1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8
1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261)	9
1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9)	9
2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6)	9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2)	9
2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4)	9
2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7)	9
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8)	9
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3)	9
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4)	9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4)	9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8)	9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4)	9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4)	9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9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8)	9
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5)	9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0)	9
3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9)	9
36.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9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6)	9
3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9)	9
39.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2)	9
4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8)	9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맡은 이춘석입니다.

훌륭하신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뜻하지 않게 법사위원장은 맡아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법사위에서 1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6년간 제삼자적 입장에서 법사위를 지켜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훈수 둘 때 판이 잘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 형님들과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직접 할 때는 전혀 안 보이던 수가 옆에서 구경할 때는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법사위를 운영해야 할지 법사위원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제삼자적 입장에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체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붕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했으면 특검이 1개도 아니고 3개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의 주동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수사상 대상인 그들이 수사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 역시 비정상입니다. 또한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사건의 약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이 세 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는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법체계가 붕괴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니 이제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도 저는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할 숙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격론의장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훌륭하신 법사위원님들 모시고 생산적인 법사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정청래·박범계·유상범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전현희·신동욱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신임 간사님들과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님,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김용민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장동혁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장경태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전현희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면 새롭게 선출되신 간사님들과 소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간사(김용민·장동혁) 및 소위원장(김용민·장동혁·장경태·전현희) 인사

(14시08분)

○김용민 위원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용민입니다.

법사위가 항상 정쟁의 중심이 되어 온 것 같지만 실상 내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법들을 계속 처리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 법사위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개혁 과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이런 개혁 과제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 민생 문제는 진짜 매우 꼼꼼하고 소통을 최대한 하면서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법을 포함한 다양한 민생 과제들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소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법사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우선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을 법사위원장으로 모시고 간사 역할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이 11년간 법사위원으로 계셨고 제가 법원에서 국회에 파견 와 있을 때 2년간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어떤 분보다 합리적으로 법사위원의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 법사위가 협치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론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할 때 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격론의 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사위를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법사위에 굳이 간사가 필요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는 여야 간 의사일정 등을 합의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간 법사위에서 간사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원장님께서 법사위를 운영하시면서는 간사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저 아무 역할 없이 간사 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 되도록 법사위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모시고 원활한 법사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동혁 간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간사님들께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장경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서 이렇게 소위원장의 소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춘석 법사위원장님 환영하고 또 김용민 간사님, 장동혁 간사님 두 분이 원만하게 잘 협력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결산심사, 예산심사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1차 추경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검찰의 특경비 507억을 전액 복원한 만큼 올해 결산심사에서 부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원만한 협조 요청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예결특위와 예산소위에서도 많은 검증의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올해는 부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동료 법사위원회분들께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오늘 새로 보임을 했는데 보임 인사부터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춘석 같이 합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로 보임된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또 선후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사위에는 지금 다양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시대적인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생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식시장 개혁이라든지 다양한 민생법안이 있는데 앞으로 법사위가 민생법안만큼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그런 민생을 살리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사위의 고유한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커졌습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감사원 정상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임하면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 표적감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원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역사에 남을 이 역사적인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슬기롭게 해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원소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됐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국민들의 주권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에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도 그 역할이 또 책임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청원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밖에서 지켜본 법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평소 존경하던 여당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많이 반갑고 많이 배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익,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엄중한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치적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 양보와 자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력하게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춘석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만 그런 점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계속 가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국회 법사위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폭주 그리고 저속한 언어로 국민

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쁜 정치의 교과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반추하면서 저 역시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 법사위가 앞으로 개혁으로 포장돼서 한 개인의 이익에 대한 법적 형평성의 예외를 허용하고 비록 그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법적 기반을 허무는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함께하시는 많은 여당 위원님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으로서 우정과 인연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사위에서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4시17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4)
  5.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0)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8)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9)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8)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9)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3)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6)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0)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4)
  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9)
  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4)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6)
  1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1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261)
1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9)
2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6)
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2)
2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4)
2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7)
2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8)
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3)
2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4)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4)
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8)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4)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4)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8)
3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5)
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0)
3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9)
3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6)
3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9)
39.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2)
4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8)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40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부터 1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12건의 법률안 주요 사항을 요약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외에 공소유지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더욱 엄격히 분리하여 수사·기소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모든 사건의 공소유지에 수사검사를 배제할 경우 사건이 중대·복잡하여 실제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아닌 공판검사만으로는 공소유지가 매우 곤란한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범죄자의 인권보호 및 교화 지향이라는 국가 형벌체계 수립을 위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15대 이후에 매번 제출된 법안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로 생명권을 보장하고 오페 시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만 사형제도 존폐 논쟁이 오랫동안 치열했던 점을 고려하여 찬반 논거와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거친 후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경우에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점을 고려하여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의사일정 제12항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휴일 및 주말에도 수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 등과 접견 교통하거나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헌법 제12조제4항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교정기관의 인력과 예산 등으로 휴일까지 수감자 접견을 보장하고 관리할 여력이 있는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는 등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한변협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건강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 및 동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고 미결 수용자에 한하여 휴일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의사일정 제14항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구속수사 비율을 낮추어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시에는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영장 발부 기

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최보윤·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신문조서 작성 시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사무관 등의 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통역’을 ‘의사소통 지원’으로,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표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여 장애인의 진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 유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력 채용과 양성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필요한 점, 적합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이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에서 다른 좌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 설치되어 있는 법관의 좌석을 수평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송관계인이 법정에서 법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압감을 해소하고 법관과 소송관계인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타탕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민참여형사재판과 같이 배심원 등 소송관계인이 많은 재판의 경우에 효율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 소요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변경하거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친일 재산에 대한 조사 및 국가귀속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재산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의 실질적 상설화 및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제정안은 정의 회복이라는 공익 실현의 측면과 함께 선의의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보호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쟁점 그리고 법률체계 재정비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

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변호사·외국법자문사·법무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휴업 신고를 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변호사의 업무 유연성을 확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인해 30일 미만 휴업은 비공식 휴업 상태로 방치되는데 일부 관리·통계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는 추후에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김성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항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한 출석답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감사 종료 시 자료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되 관련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이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 행정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옮겨 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과 감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개정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5항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한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8항 박준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사유 및 보험목적의 제한을 통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의 약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체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족의 장

래를 위한 가계보험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 제도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9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산 양수·양도와 상장회사가 중요한 자산 처분을 통한 현물출자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상장회사가 영업양도, 물적분할 등에 요구되는 엄격한 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자산 및 중요 자산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경우 긍정적인 입법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1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소집지에서의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충실의무의 강화·구체화를 통해 우리나라 주주 보호의 수준을 제고하고 소액주주 등의 총회 참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행사 시기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법무부는 1년 6개월, 법원행정처는 전자주주총회의 의무화에 따른 시행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34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률이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학대행위의 금지와 그에 대한 처벌을 일괄하여 규정하려는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법은 주체가 보호자로 제한되지 않는 범죄는 타법을 인용하고 주체가 보호자로 제한되는 범죄만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서만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개정안 심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이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화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5항부터 40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특정하여 집단소송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남소의 부담을 덜면서도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단소송의 확대 도입에 따라 개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집단소송 도입의 찬반론을 고려하여 집단소송의 전면적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한 집합건물의 하자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하자심사위원회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은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데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은 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실조사로 당사자가 이에 따른 조정을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 징벌적 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분야의 개별 법률에 도입되어 있고 특별법을 통한 전면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민사법의 특례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 간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면 도입은 우발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의 원칙과 민사·형사 소송체계와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이화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최재해 감사원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이두희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및 이완규 법제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임명되신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이두희 국방부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법무부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저희가 성심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두희 국방부차관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새로 임명된 이두희 국방부차관입니다.

사실 저는 법사위에 첫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면서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 군이 군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매진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법사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차관, 모두 차관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대체토론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이춘석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간사님들 두 분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양당 간사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은 3분, 대체토론은 5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본인은 많이 사용하고 싶지만 많이 사용하면 여기에 참석하신 대부분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격하게 이 3분, 5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사위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쪽에 앉은 분들이 야당 위원들, 이쪽이 여당 위원이었는데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착잡한 기분으로 법사위의 새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이춘석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고맙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난 1년 우리 법사위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우리 법사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법사위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대한민국이 정상 항해할 수 있도록 모범적 상임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대화와 타협, 모범을 우리 법사위부터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 상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쟁점이 있을 때는 여야 위원,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까 모두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특검법이 통과 돼서 3개 특검이 활동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헌법 기관들의 책임도 물으셨지만 우리 법사위도 과연 정상적으로 헌법기관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상적인 헌법기관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를 우리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는가 새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의 여당은 야당으로서 헌법기관들의 여러 가지를 발목 잡기 하고 또 많은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특검의 출범 자체가 정상적인 헌법기관의 행위를 정치적 검사에 의해서 대체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특검 활동이 정상적인 헌법기관들의 행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여야 위원님들이 새로운 각오로 법사위 앞으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으로 잠시 이석해야 하므로 혹시 국방부차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국방부차관 한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방부차관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니까 국방부차관님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한테……

○위원장 이춘석 가셔도 돼요? 계시고?

○장경태 위원 국방부차관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고 이 발언까지 듣고 국방부차관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사위원회께서 새로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함께 환기하고자 말씀드리는 데요. 작년 24년 10월 11일에 저희 법사위는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군사안보상의 이유로 법사위 국정감사가 정회가 됐었고요.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또 언론보도에서는 무인기, 각종 드론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라는 것을 빌미로 법사위 국정감사를 조기에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또 장관직무대행이 오셨으니 저희 법사위의 정

당한 국정감사가 왜 방해받았는지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보고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지금 발언을 통해서 보고받자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장경태 위원** 추후라도, 위원장께서 상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차관님이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장경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제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잘 모릅니까?

○**장경태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잘 모르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따로 확인 후에 장경태 위원님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자료를 체크하고 나면 저희들에게도 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일단 장경태 위원님한테는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자료가 준비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서면보고가 작성되면 법사위 전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이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대체토론 또 하실 분?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이진수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박균택 위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첫 차관으로 임용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오늘 검찰청법 개정안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검찰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일단 운영 과정에서 검찰 내에서도 그 원칙을 좀 강화하자는 이런 내용의 법안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법률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입법화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균택 위원**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도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그리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되어 있고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의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소검사 외에 수사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관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법안이 문제가 있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사법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와 같은 입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말씀입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공약과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박균택 위원**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배상윤 알펜시아 회장 여기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동남아시아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보도됐던데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표적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죄명에 대해서 추가 확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표적수사를 주장하고 있던데 그 내용은 과악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내용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챙겨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의혹이 충분히 맞다고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하면 왜 3년 동안 그 사건을 계속 들고 있었는가, 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 왔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상대로 이제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기소를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 수사였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혹을 느끼게 하는 수사를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관직무대행이신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새 인사가 있기 전이라도, 새 장관님 취임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직무대행권자로서 그 역할을 한번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균택 위원** 오늘 감사원법 개정안 내용 보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게 결국은 그동안에 감사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오지 않았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어느 정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원장님은 과거에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마찬가지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것은 여러 차례, 지난번에 탄핵심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설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박균택 위원** 지금 원장님으로 인해서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제기가 됐고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임기는 끝까지 지키실 예정이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헌법상 주어지는 임기이기 때문에 그 임기 자체를 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쉽다고 안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여야 교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들어 주신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곽규택 위원** 오늘 오후 4시 반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기도지사 시절 범인카드 1억 이상 사용한 그 사건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 열릴 예정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7월 22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 진행될 예정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공판기일은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적용될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법원하고 조율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중지하기로, 추후 지정하

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대법원에 보고되거나 한 사안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좀 특이하게도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선 때 출구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설문까지 출구조사에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60%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도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 보도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일옹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법원의 확인은 없는 상태고 그냥 개별적으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이,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검찰에서 변론기일 빨리 지정해 달라 하는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판결도 그렇고 또 재판절차 진행도 그렇고 모든 것이 헌법의 정신과 해석을 따라서 합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적절하게 재판 진행 그리고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곽규택 위원 절차적으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추후 지정한 재판이라든지 또는 오늘처럼 공판준비기일을 그냥 열었을 경우에 변호인이 공판 중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재판부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또 항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 그럴 절차적 가능성은 열려 있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이 절차상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곽규택 위원 지금 추후 지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알고 계시지요, 기일 추후 지정된 사건?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냥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일이 자꾸 지정되지 않고 미뤄질 경우에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 달라하고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불복할 생각이 없다 이런 취지시네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그와 같은 지정이 있은 후에 현재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챙겨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곽규택 위원** 지금 대법관 중원을 비롯해서 대법원과 관련된 사법개혁이라든지 또 수사기관의 그런 구조개혁이라든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법시험 부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쟁점들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회 차원의 사개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개별적인 입법으로 국회에서 자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중요한 국가·헌법 기관 또 사법절차 또 사법 구조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전현희 위원** 지금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일체의 형사상 소추가 대통령에는 중단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추의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소추주의 규정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한다. 즉 공소제기, 공소수행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법 규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중단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와 같은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법원에서.....

○**전현희 위원** 지금 검찰 입장은 어떠냐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결정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헌법학자들께서도 좀 논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현희 위원** 지금 그냥 법무부 입장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

○**전현희 위원** 입장이 없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전현희 위원**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헌법 책을 한 스무 권 가까이 찾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

이 중단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교과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가 당연히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저희들은 개별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만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재판부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전현희 위원** 행정처가 이것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교과서 등을 검토해 가지고 입장을 정해서 하급 재판부에 행정지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업** 이미 개별 재판부에서 재판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 차원에서 개입한다고 하면 재판 관여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 재판 관여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전현희 위원**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사냥개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이 최근에 허위·조작·표적 감사로 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윤성원 전 국토부차관 재판에서 감사원의 이런 허위·조작 감사 정황이 드러났고요. 당시 감사하는 도중에 국토부 직원들에게 청와대가 배후에 있음을 입증하라고 강요했다는 그런 내용이 감사 문답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불법적인 강압 감사 행태는 저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저를 사퇴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중대 혐의가 있다라고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을 상대로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렇다면 당신은 무사하다. 우리는 직원은 관심 없다. 권익위원장이 지시했다고만 불면 직원은 다치지 않는다’라고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허위 답변을 종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문답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시시각각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도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이 강압적으로 표적을 삼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지금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강압적 감사 행태를 실제로 그렇게 했고 이번에 또 그런 정황까지, 증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권의 표적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돌격대를 했던 감사원의 책임자가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하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현희 위원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그 당시 권익위 위원장님을 상대로 한 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도 누차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현희 위원 그렇지 않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위원님, 나중에 추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꾸 룰이 깨지니까 원칙대로 5분을 지켜 주시고 필요하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당 측으로, 주진우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법무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주진우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라인에 집중 배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 민정라인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또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부 다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사권과 또 인사검증권을 동시에 쥐게 되는 건데요. 전부……

저는 사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지금 이해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검찰의 독립성은 인사권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주진우 위원 이게 공소유지를 만약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 검사들이 수행을 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입는다면 저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것은 국민 피해로 다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인사에 대해서는 실력과 인품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권력에 굽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돋는 것이 저는 법무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민정라인에서 그동안 사실 변호인의 입장과 검사의 입장으로 계속해서 수년 간의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 공방을 하고 법리 공방을 해 왔는데 거기에 있는 상대 측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다시 민정라인에 가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한다면 저는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법무부에서 개별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현재 그렇게 복안으로 말씀드리기까지 내용이 검토된 바도 아니고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진우 위원 국정원 기조실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기조실장이 임명됐는데

이분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돈이 갔던 문제다 보니까 국정원에 관련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일부는 또 법원에 증거로서 현출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 기조 실장으로서 가게 되면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고 향후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증거의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것은 가정되는 상황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진우 위원 공소유지에 좀 더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요.

저는 지금 민정라인에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 앉으면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의 선고기일이 4개월 뒤로 잡혔어요. 언론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봤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재판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4개월 뒤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치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에 대한 책임 있고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독려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거나 신속한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대통령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을 존경하는 꽈규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기는 하지만 재판부별로 지금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재판이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 있어서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가 없고,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검찰의 역할, 변호인은 변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사들이 명확한 법리가 없을 때는 항소해서 상급심의 판단, 결국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를 구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민정라인의 대통령 변호인단이 인사권을 쥐는 부분과 연계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부분은 선고기일 진행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법원의 재판 진행을 저희가 존중해 왔던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하시고 계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심우정 총장 오늘 사의 표명했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총장님을 보좌했던 간부로서 총장님께서 사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장경태 위원 왜 임기를 못 마치고 불명예스럽게 사의 표명했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것은 총장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이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면 형사부장으로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불기소 또 검사 후배들이 수사 과정에서 안방조사하고 황제조사 하고 핸드폰·신분증 뺏기면서 수사하셨던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는 도이치·명품백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조사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명품백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태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당시 청탁금지법 관련된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개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 궁금한 것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26일 날 윤석열 기소 과정에서 심우정 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 개최 등으로 아주 시간 끌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차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당시 검사장회의 개최는 총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으로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해 놨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는 구속기간 시간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일선에서 너무 괴롭겠지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구속기간은 시간입니까, 일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현재 대검에서도 일자로 기산하라는 업무 연락을 시달한 바 있고요. 현재로서는 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위원 윤석열에게만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하라고 지침 내렸다가 대검이 입장 바꿨잖아요. 구속취소되고 다음날 바로 지침 내리지 않았습니까, 일선 검사들에게 구속기간을 일로 다시 하라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시달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시달까지는 그렇게 걸렸지만 그것 잘못된 결정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현재 형사소송법과 기존의 관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업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맞습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했던 법원의 지귀연 판사의 판결과 대검

의 입장은 잘못된 입장이었지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 계속 김석우 차관이 그 자리에서 옹호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대검의 판단은 시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당시 그 기준으로 구속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즉시항고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3월 7일 구속취소 인용되고 나서 즉시항고 7일간 주어졌는데 왜 즉시항고 안 하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당시에 대검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추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예.

○장경태 위원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 때 4명만 있으셨다고, 제가 12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문드렸더니 4명만 모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안가 CCTV 영상에 등장을 하셨어요. 이것 그러면 위증하신 겁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위증은 아니고요, 그때 한정화……

○장경태 위원 4명만 모인 것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제처장 이완규 한정화는 모임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사람이라서……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모임의 대상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초대받았냐고 한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초청한 사람 아니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여 있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다 받아 왔어요. 그런데 4명만 모이셨다고 계속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때 모임자가 4명이라는 것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4명만 계시지 않았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면 그 당시에 수행했던 사람들 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최소한 7명 있었다, 8명 있었다 이 얘기를 하셨어야지 4명만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4명만 있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지만 제 생각은 주된 모임자가 4명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명만 있지 않았고 지금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제가 차량번호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 다섯 대가, 박성재·이상민 장관, 두 장관의 차량을 제외하고 다섯 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완규 처장님은 그 당시에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법률비서관까지 5명이잖아요. 추가로 더 있었던 분 누가 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딱 5명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장경태 위원 그 현장 자리에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딱 5명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예.

○장경태 위원 수행원도 없고요? 수행원까지 포함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뭐 수행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공간 안에는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이진수 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박준태 위원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행까지 맡아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형제 폐지 법안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봤습니다.

○박준태 위원 우리나라가 97년 이후에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현재 사형수가 몇 명 있는지 대략 아십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요 법무부에서 57명으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의 사형수가 지금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21년도에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오종근 또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법원 내에 온정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의견을 내 왔습니다. 무기징역 받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또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여자친구를 백구십 차례나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자

가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 이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셨나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법무부의 입장은 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의 입장은 형사정책적 여러 기능과 국민 여론,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 기조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사형제 유지·집행 이것은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관용원칙을 분명히 하는 선언과도 같은 상징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박준태 위원 나오신 김에 계속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에 검찰총장, 대검 차장, 동부지검장, 법무부 기조실장까지 다 검찰 수뇌부가 일제히 사의를 표했습니다.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검찰 해체법, 검수완박 시즌 2 이것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기 때문에 사의를 표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동의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사의를 표한 배경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왜 사의를 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정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시중의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을 발족하고 대규모로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해서 구 여권, 지금의 야권 전반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심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재편해 가지고 여권 입장에 맞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답할 수 있는 성격의 말씀…… 제가 답하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희 검찰 수사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합니까?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 동의하

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밝히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좀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준태 위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준태 위원** 급하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법무부차관, 헌법 84조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돼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차관의 입장은 뭡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참 답변드리기, 제가 어제 임명…… 제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성윤 위원** 입장이 뭔지 입장만 말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이성윤 위원** 뭘 검토해야 됩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의 입장이든 개인의 입장이든 얘기해 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검사 수십 년간 하신 분이 이것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와서 지금 대검 소속으로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직무대행으로 나왔잖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 그때 참석하셨지요, 회의에? 지금 장경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당시에 대검의 결정에 대해……

○**이성윤 위원** 아니, 그것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본인의 입장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본인 입장은 뭐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대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이성윤 위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총장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보라고요, 현재 차관의 입장. 그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런 평가를 하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답하는 것 처음 봤어요. 입장 없습니까?

○**박은정 위원** 본인 찬성했다면서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 나왔는데, 본인 찬성했다고. 찬성했습니까?

○**이성윤 위원** 차관.

○**박은정 위원** 대검 부장회의, 찬성했냐고요!

○**이성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박은정 위원** 왜 답을 못 해.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다음번 질의하실 때……

○**이성윤 위원**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검찰 인사 관련 보도가 났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현 그다음에 중앙검사장에 정진우 이 두 사람이 발령될 것이다, 그것도 7월 1일 자, 오늘 자로 발령될 거라는 기사가 났어요.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기사 내용은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에서, 이 기사 보셨고.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보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인사 발표 전에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오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도 인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성상현 검찰국장은 정말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이 검사가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말이지요 내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수사를 한 검사이고 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수사를 한 친구예요. 이런 검사를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임명해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시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인사를 전제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오늘 인사 발표가 났어요. 보수 신문에 났다는 얘기는 말이지요 누군가 언론에 훌린 겁니다. 옛날 윤석열 사단의 수법이 그런 거예요. 언론에 훌려서 여론이 안 좋으면 슬쩍 발을 빼고 웃잖다 싶으면 설득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 인사 관리를 훌린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징계하십시오. 성상현,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창수 검사장 사표 수리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언제 수리됐는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대통령 당선된 날, 대통령선거일 날 사표 수리됐어요.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아시지요? 아십니까? 수사 중인 사람은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여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검사들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 보고 사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법무부차관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굉장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네요.

헌법 84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법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자들의 견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소추 개념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좋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얼마 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판을 계속 받으시겠느냐, 지금은 재판이 중단되더라도’ 이렇게 물었을 때 ‘특별한 답이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재임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검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면 그 이후에는 재개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께서 한 강연에 나가서 ‘국민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제가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물론 1심 이후의 재판이, 선고가 난 재판은 아니겠지만 지금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대북송금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안 났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동욱 위원** 어떤 경우에 공소 취소를 합니까, 대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 입장에서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

음 듣는 내용인데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몇 개 사유가, 즉 공소제기기법률상 절차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정성호 내정자께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언론보도로 접했는데 법률가적으로 보시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본 바가 없고요. 다만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기준의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명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없지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은 아니시잖아요. 청문회 거쳐야 되고 법무부장관 취임하실 텐데 이게 혹시 검찰에 압박이 되거나 공소 취소를 하라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신동욱 위원** 장관이 되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됐을 때의 얘기와 지금 내정자의 신분으로, 제가 내정자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인으로 했을 때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 압박이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어떤 배경과 내용으로 장관후보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하지만 재판은, 검찰의 업무는 검찰의 업무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신동욱 위원** 세 번째, 공소 취소가 되면 다시 수사하기는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신동욱 위원** 어려운 거지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재판을 중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임기 이후의 재판까지, 임기 이후에 이 문제까지 다 덮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법무부장관 내정자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질의로 지금 처음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걱정이 돼서, 이게 우리나라 사법체제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런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나, 최재해 원장님, 제가 며칠 전 기사 보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퇴임을 요구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 직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실무협의회 회장 이하 몇몇 직원들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신동욱 위원 그런데 감사원장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건데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게, 물론 그들의 자유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특별히 조사하거나 한 건 없고요. 그냥 여러 의견들 중에, 저희 감사원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여러 의견 중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하나만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소 기각 관련해서 그런 법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327조 1호 혹시 아십니까?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취소하도록, 공소 기각하도록 돼 있어요, 327조 1호. 그래서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이 법원에 없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 적이 없다’, ‘그런 법문 자체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내용 등을 찾아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저 하면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차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들이 많고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본인이 왜 임명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취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차관이라는 자리에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법무부에 부과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검찰은 또 수사하는 부서라서 혹시 다를 수는 있지만 법무부는 전형적인 행정부서 아닙니까, 차관 자리고. 그렇다면 이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숙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고민이 되어 있는 건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 정부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방안 중에서 사법 개혁에 있어서는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공약으로 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검사들이했던 정치 편향적인 수사 그것을 아니라고는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을 망친 거는 지난 3년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런 대명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차관께서 검찰에 계실 때 이른바 기획부서라고 하는 데 많이 있으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기획부서가 보통 기획하는, 그 조직의 수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서포트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획부서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기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검찰이 위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이런 것을 했고 그래서 검찰 출신이 그렇게 또 법무부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일부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차관 본인에 대해서도 그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시각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지금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것에, 당연히 본인도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한 것은 그런저런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그리고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다면 차관으로서는 이제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용산이든 국회든 여러 가지 협안을 서로 조율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완수할 각오로 있는 것은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또한 한 가지 더 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차관 자리를 수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법무부차관으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전

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도 84조가, 대통령 면책특권 그게 무슨 평등에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정확하게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 동안 혹은 아예 공소취소를 하든 잠깐 정지시키든 간에 그건 묻지 않고 형사 프로세스에서 면제되게 해 주는 것 그게 헌법정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조차 그걸 인정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법무부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도 좋고 다음 기회라도 명확하게 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송석준 위원님이 먼저 드셨는데……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는……

○위원장대리 김용민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니시지요? 토론이시지요?

○송석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먼저 토론하시고……

○송석준 위원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배숙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양보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알겠습니다. 기회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법무부차관님, 보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것이 지금 대명제라는 데 동의하나?’ 이렇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동의한다’ 이러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지금 의사일정 4항에 보니까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판검사도 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해 봤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떻던가요? 공판을 하다가 유죄 입증이 조금 어려울 때는 수사검사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업무 서로 연락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런 경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수사하고 기소를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 형별권의 적절한 행사를 추구하는 형사사법 절차에 미칠 영향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언급인데요.

자, 봅시다. 물론 사건이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건도 있지만, 공판검사가 기록 보고 그냥 딱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리고 엄청나게 공부도 해야 되는 이런 사건, 예를 들면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 같은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수사하는 데 공을 들이고. 공판검사가 그 기록 봐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유죄 입증이 어려우면 누구만 좋습니까? 범죄자만 좋고요, 피해자는 정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탄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하고 특히 전문적인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융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게 절대선이다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 그래서 이게 공소유지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만 형사사법 정의를 살리고 그리고 또 정말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관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그 부분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특히 검찰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수사, 수사 개시를 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된다든지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검찰의 이런 직접 인지수사가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적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제도간 간에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그것이 일부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제도 안 된다, 그 제도 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건 너무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 절차가 70년 지속돼 온 절차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너무 출속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법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또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상법 부분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상법도 지금 상법 개정안이 아주 핫이슈입니다. 재계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반 경제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마에 올랐어요. 이사는 물론 회사에 대해서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했어요, 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주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분 아닙니다. 저 5분 아닙니까?

○위원장 이춘석 5분 지났습니다.

○조배숙 위원 3분 아니었어요?

○위원장 이춘석 5분 지났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아니요, 안 됩니다. 원칙을 지키고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에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심우정과 김주현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비화폰 통화 화면 보면 10월 10일에 12분 32초 그리고 11분 36초. 심우정은 검찰총장이에요. 법무부차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비화폰 썼습니까? 비화폰 받았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예겐 없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검찰총장이 비화폰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화폰 받아 본 검찰총장이 없어요. 그런데 비화폰으로 통화했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렇게 많은 통화를 하는 게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점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김건희하고 김주현 17분 49초, 15분 58초를 통화해요. 그때가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 직전이에요. 명품백 황제수사 관여했지요, 차관께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 당시에 형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형사부장으로 관여했지요. 그때 김건희하고 김주현 두 사람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김건희, 윤석열 부인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요. 김건희, 부인이 비화폰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적하는데 김건희는 온갖 특혜를 다 누렸고, 도대체 뭘 가리려고 비화폰 통화했는지 이건 낱낱이 밝혀내셔야 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법무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알지요?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명품백 크리스찬 디올백이었습니까, 300만 원짜리? 그것만 받았습니까? 아까 청탁금지법 그거 보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김건희 또 무슨 백을 받았습니까? 건진으로부터 무슨 백 받았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언론에서 샤넬백으로 보도된……

○서영교 위원 샤넬백 그리고 또 목걸이. 목걸이 같은 건 얼마짜리예요? 60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귀걸이, 팔찌, 수천만 원짜리예요. 샤넬백은 800만 원짜리랑 1200만 원짜리해서 약 20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김건희 압수수색했을 때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했는데 그 핸드폰이 9월에 출시된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공기계들이에요. 그런 것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 형사부장이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서영교 위원 핸드폰 제대로 압수수색했었습니까? 모르지요, 그 내용?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위원 모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또 이 샤넬백과 이런 것들도 똑같이 반부패, 어떻든 김건희 관련한 그 일들을 담당했을 텐데 샤넬백은 감도 못 잡으셨었나요?

어떻든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돈과 물건만 오간 것이 아니라 온갖 조직적인 부패와 조직적인 직권남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면서 법무부차관이 되셨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 찾아내고 다 뒤집어 내세요. 제대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무너진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법원행정처장님, 김용현이 구속 6개월 됐다고 풀려날 뻔했어요. 그게 됩니까? 내란범이 구속 6개월 됐다고 풀려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지귀연 판사는 왜 제대로…… 재판을 질질질 끌면서 하고 있지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재판을 2.5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지귀연은 15일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김용현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내란·외환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에서 지귀연은 왜 재판을 질질 끌지요? 이것 어떻게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민 모두가 주시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서영교 위원 믿는 게 아니라 행정처면 재판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좀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해야 된다, 노상원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재판 관여가 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법무부차관님, 오늘 안건 중에 29항·31항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상정됐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단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심지어 주주의 이익을 강조한 이런 규정 개정이 어쩌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기업의, 직원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든가 또는 사회활동 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산업정책의 하나의 제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쩌면 기업의 역할이 대한민국 고도 성장, 경제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법 개정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관계 조정이 좀 덜 된 느낌이 있어요, 또 경제계에서도 많은 이의 제기가 있고.

다 듣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일모레 또 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만약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들이 기존에도 제기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소위에서는, 이게 과거하고 현재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새 정부의 의지가 달려 있을 것이고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이 작용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고용 창출하고 경제의 베풀기이라는. 그래서 기업의 경영환경에, 앞으로 미래의 환경에 맞는 그런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 새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요.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헌법기관이라고는 안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형사사법제도의 중심 기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여러 가지 위헌적 대안 제도가 입법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직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새 정부가 이제 초라도 우리 헌법질서, 형사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절대 훼손되지 않게끔 그 기준 명확히 하시고 또 엄중히 법무부의 그런 입장을 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다음은 천대엽 처장님, 엊그제 법관회의가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거기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대해서 좀 법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진술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온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형사사법제도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그래서 대법원의 정원이라든가 또는 삼심제도, 특히 이번에 어떤 법안에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소원 대상에 재판도 넣겠다고 해서 상당히 사법질서 전반을 혼란 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 해도 사법부는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송석준 위원 우리 헌법정신 그리고 오랫동안 다듬어져 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아무리 새 정부에서 초기에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끔 견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자율적인 단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인 가치 또 사법의 가치를 다 깊이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처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엄정하게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이완규 처장, 오랜만입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뭐 하고 지내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어쨌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인수인계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아마 곧 임명되면 다시 사인으로 돌아가게……

○박지원 위원 차관도 함께 들어 주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법무부차관, 함께 들으시라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박지원 위원 이완규 처장은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소위 왕 법꾸라지들, 왕 법기술자들 네 분이 모였지요? 모였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그것을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저는 저녁 먹으러 간 것뿐입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그 모임 후에 핸드폰을 이상민 장관 외 모든 분이 다 파기했어요.

그때 두 분의 다른 사람이 있었다, 기억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몇 사람 있었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한정화 비서관이 와 있었는데 비서관은 우리랑 같이 얘기하는 대상은 아니었고요. 아마 민정수석 때 문에……

○박지원 위원 거기에 법률비서관이 있었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법률비서관이.

○법제처장 이완규 그러니까 법률비서관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비서관은……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법률비서관 외에 누구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없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이었나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다섯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네 사람이지요. 그날 대화하려고 모인 사람은 네 사람이지요.

○박지원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없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총리와 장관이 부서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한덕수 총리, 대통령권한대행한테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보도를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보도를 봤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부서 안 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부서 안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박지원 위원 아니, 부서하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요?

○박지원 위원 예.

○법제처장 이완규 저는 부서자가 아니니까요.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후에 파기했어요. 그 내용 알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박지원 위원 언제 보도 봤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오늘인가 봤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박지원 위원 파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공문서 조작을 했고 파기를 했고 증거인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모릅니다, 전혀.

○박지원 위원 법무부차관, 검찰에 있을 때 이러한 내용 파악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내용이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직전까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였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현재 법무부차관으로 와서 이런 보고 받았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에서 이 4인방, 추어탕 집인지 법꾸라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조작을 한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 역할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내란특검에서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수사 대상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박지원 위원** 철저히 하시도록 하고.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제가 관계해 있는 서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처음 감사원 결과를 통보할 때는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문건에는 삭제 지시 문건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최종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위원** 예. 그것 알고 계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것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좀 더 줄 수 없어요?

○**위원장 이춘석** 아니요, 일단 원칙을 지켜 가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장관직무대행님, 오늘 검찰총장이 사직을 하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은 어떤 의견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검찰개혁이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처음에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하면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으로 나아간 이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하시

는 것을 보니까 지금 검찰총장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야당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애매하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문제가 없고 그냥 논의만 심도 있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읽혔고 그렇게 단어를 고르시느라고 매우 애쓰시는 모습을 아까 제가 보았습니다.

사직한 검찰총장의 입장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관한 여당의 입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먼저 정정을 하자면 제가 위원님께 검찰의 미래……

**○장동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검사로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청이 사실상 폐지되고 검사의 역할은 공소유지에 한정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해 왔던 경험에 의하면 그게 맞는 방향이고 그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체계의 제도개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인권 보장, 권리보호를 위해서 매우 합리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사건들이 검찰의 수사 절차를 거쳐서 기소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수사기관으로 나누어 놓고 검사는 공소유지에 한정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금까지 검사 생활 했던 여러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반성적 고려를 해 본다면 지금의 방향이 맞고 그런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의 검찰개혁 방향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설명을 먼저 드린 것이고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든지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장동혁 위원**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오셨잖아요. 이게 한 번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존속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 놓으면 그 조직은 계속 존속하게 될 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이시지요?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법무부차관님, 오늘 야당 쪽에서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검찰의 인사를 하는 기관인 민정수석, 민정라인…… 원래 법상으로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민정라인이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합법적인 검찰 인사를 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그렇게 장악을 하고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라는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 수사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검찰 인사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에서 장악하고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잡아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권의 기득권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좋은 수단입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하며 그것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충돌 얘기도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순직 채 해병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고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해충돌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표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준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조금 더 물까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이 보고를 하다가 중단됐다라는 뉴스는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김용민 위원**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서 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 그래서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 정부에서 가장 핵심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지난 대선은 그러면 왜 치른 겁니까? 대선에서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혁신에 이전에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분명하게 잘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게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PPT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에 법대를 좀 낫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법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법원의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인데요.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봐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시키겠다. 그리고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된다’. 이게 어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심인데 그 사건에서 당일 날 재판이 끝나고 즉일선고를 합니다,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방청석 그리고 변호인이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겁박을 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계다가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부가? 법원조직법 66조에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합의할 때는 다수결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삼자 합의하……

○김용민 위원 이날은 합의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결되고 나서 곧바로 선고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겁박하고. 이 판사에 대한 감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마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민 위원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3분씩 원하시는 분만 하기로 하고…… 잠깐만요.

저도 시간 3분만 넣어 주십시오.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은 평생을 감사원에서 보내셨고 또 법원행정처장님은 법원에서 평생을 보내셨고 법무부차관과 법제처장은 거의 평생을 검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의 17년 전의 모습과 답변 태도를 지켜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앓아 계신 네 분의 답변 태도는 제가 초선 위원으로서 질의할 때의 모습과 단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기관이라고 타칭되는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그걸 개혁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검찰, 권력기관은 다 국민의 심판 속으로 사라져 가야 할 겁니다.

늦었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원도…… 감사원은 제가 있을 때보다

도 더 후퇴했습니다. 정말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태도의 전환과 긍정적인 태도와 답변을 원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에, 12·3 내란 사태에 의해서 한겨울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차가운 거리를 지켜서 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정부, 국민주권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 분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법무부차관의 태도도 기존의 검찰과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어제 임명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재명 정부와 뜻을 같이한다고 하면 태도를 바꿔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법무부차관 질의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기소 맞지요, 다른 말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전현희 위원** 그러면 공소수행은 뭡니까? 재판이지요, 재판 유지하는 것?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전현희 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에 소추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수행이 소추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형소법에 따르면. 그러면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공소수행, 즉 재판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형사 불소추특권, 헌법 규정 84조 소추에 재판 수행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형소법 규정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검사의 공소수행이 중단돼야 되는 겁니다.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 거지요.

차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수행 중단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할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법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추 헌법 규정과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할 거냐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기존의 법무부의 검토 내용과 그 부분을……

○**전현희 위원**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법 규정에 따라서 소추는 형사재판이 포함된다. 그러면 불소추특권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중단돼야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이 자리가 제가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아니, 지금 법 규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제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법원의 입장은 일단 차치하고 검찰에서는 공소수행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

○전현희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 내용.

감사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사상 초유의 국민들의 비난과 실망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상 독립 기구인 감사원이 사실상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지금 온갖 범죄와..... 그리고 또 감사원장도 형사 피의자로 전락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했던 정권의 하수인 역할, 정권에 부역했던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전현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만 하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럴 생각 없습니까? 여전히 후안무치하고 뻔뻔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감사원장입니다. 가장 책임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형사 피의자로 수사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을 이렇게 무너뜨린 책임을 국민들에게 통감하고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지난번에 그런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받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으로.....

○전현희 위원 탄핵소추는 감사원 자료만 가지고 했지요. 실제로 수사 자료가 없었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꼭 하셔야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예.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절제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지금 대체토론 시간인데 여기 감사원장한테 물러나라 이런 취지의 대체 토론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전현희 위원님,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흥분하지 마시고 좀 들어 보세요.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한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물러나라 이런 강압적인 표현을 하는 것 이게 국회 의원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위원장께서 대체토론 시간에 이런 감정 섞인 사퇴 종용, 압박 이런 것은 제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현희 위원 지난 정권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했던 일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한 발짝씩 더 나가도록 하겠고, 법사위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사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좀 더……

○서영교 위원 잘했어요, 전현희 위원.

○위원장 이춘석 그냥 평소에 발언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에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전현희 위원님도 깊게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자꾸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곽규택 위원님이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불성설입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무너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자인 감사원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물은 것이고요. 이 분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사원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일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해야 할 그런 감사원이 사실상 정권의 부역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망각하고 전 정권에 부역해서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은 것에 대해서 그 수장인 감사원장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을 법사위 위원으로서 당연히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저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상 감사원이……

아까 감사원장이 임기가 중요하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저를 물러나게, 사퇴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표적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거의 1년 가까이 표적감사를 하고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억지로 수사 요청을 하고, 그 결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오고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도 최종 무혐의 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안에서 사실상 무고의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의 혐의, 감사원법을 위반한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해서 모두 다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감사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회의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이 부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감은,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저를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장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취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 감사원장을 향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영교 위원**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장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정하면서 위원장님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 법사위로 회부된 안건을 상정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그 기간 이후에 저희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여야 필요한 법안 2개씩을 또 협의에 의해서 상정해 주시고 원만하게 법사위 운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제도들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 률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나라들도 그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상법의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같이 논의가 돼서 이미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이런 적용들을 과연 그대로 다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법을 개정할 때는 그것이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고 한 번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보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는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 등과 함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내일 소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여러 의견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제기가 됐고 했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다 반영이 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내일 소위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감사원장님, 지금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폐공사와 부동산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감사기간 동안 네 번, 감사 종료 이후에 열다섯 번, 총 스물네 차례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 등의 여러 가지 부당한 감사를 했다는 많은 제보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당하셔야 될 걸로 보고.

사퇴 요구도 전현희 위원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 국장, 부장 등 간부들이 다 내부 게시판에 사퇴 요구하셨지요? 그 글 보신 적은 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일부 직원들의 의견도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사퇴 요구했던 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내부감찰을 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것 때문에 내부감찰 한 것은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밝혀지면 책임지십시오.

○감사원장 최재해 예, 다른 건입니다.

○장경태 위원 다른 건이시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국회 감사요구안 아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희가 감사 몇 개월 안에 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3개월 플러스 2개월 총 5개월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6월 아닙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장경태 위원 로펌으로부터 법률 검토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토의견서 받으셨는데 보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세 군데……

○장경태 위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검토 받으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세 군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장경태 위원 세 군데 자료 다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직 처리 중이어서 지금은 곤란하고요.

○장경태 위원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를, 3개월 플러스 1인데 지금 6월이 됐지 않습니까? 4월까지 해도, 플러스 1 해도 5월까지 제출하셨어야지요. 감사 결과 발표하셨어야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장 최재해 신중하게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해야지요, 3개월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감사원장 최재해 진짜 국회법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희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전에는 신속하게 감찰 결과 발표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 여기서……

○전현희 위원 저는 1명 제보했다고 감사했잖아요.

○장경태 위원 24명 검찰 수사 요구하시고 11명 기소한 사건 제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경태 위원 아무튼 빠르게 하십시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은데 빠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 결과 보고 발표하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부차관님, 지금 검사 신분은 아니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무행정을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을 때 하나도 제대로 온 게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 받으실 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방첩사에서 선관위 서버를 털었을 때 포렌식 기술의 최고인 대검의 포렌식센터에 맡겨서…… 그리고 선관위 가면 검찰이 있을 거다라는 여러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상호, 노상원 등도 다 선관위 가면 검찰이 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수사 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제가 비화폰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 안 했고요.

허정 검사장, 과학수사부장이지요. 과학수사 1과·2과 2·3·4일 출퇴근 기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정보라고 못 준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른 시각 알려 달라고 했습니까? 출퇴근한 기록 달라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를,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요? 제가 이것은 실명 얘기 안 할 테니까…… 공무원 출퇴근 기록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검찰총장 비화폰 제가 자료 요구 했을 때도……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비화폰 존재 유무만 물었어요, 제가 비화폰 사용 기록을 물은 것도 아니고 비화폰 있느냐 없느냐. 이원석 총장도 비화폰 있었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 사용했잖아요. 사용 존재 유무를 물어봤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비화폰 존재 유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과학수사부장과 과학수사 1·2과 2·3·4일 출퇴근 기록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아주 중요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 목소리가 크셔서 마이크 안 넣어도 다 들렸습니다. 취

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경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법무부차관님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야당 측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상법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이고, 그래서 이 기업을 규율하는 상법 그리고 또 관련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들, 주주에 대한 충실험무가 있습니다. 충실험무가 있는데 지금 그게 확대가 됐잖아요. 원래는 회사에 대한 충실험무가 총주주에 대한 충실험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래서 주주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그런데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의 이사가 볼 때는 5년 뒤, 10년 뒤를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적자잖아요. 그러면 일부 주주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주 이익에 충실했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게 계속되면 위축이 되는 거지요. 제대로 된 그 기업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델라웨어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이와 같이 주주 이익을 보호를 해 줬어요. 그래서 소수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까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그것을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고 해서 덱시트(Dexi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경제에 관련된 이런 법률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에 대해서 이것을……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지금 상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금 총주주, 주주 이익 보호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주주 이익으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점 등등도 지금 함께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이 총주주 이익 보호의 방향은 도입되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조배숙 위원** 부작용이 없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조배숙 위원** 그런데 배임죄로 많이 고소할 텐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총주주 이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이럴 경우에는 자기 이익이 침해됐다고 배임죄로 고소할 텐데요. 또 우리 법원은 배임죄에 대해서 상당히…… 배임죄가 외국에는 없는 형법 아닙니까, 죄명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위원님께서……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하려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로 입법화가 되면 위

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남발이 되어서 기업이 부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 주주 이익을 요건으로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은 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그것은 해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남발되는 배임죄를 어떻게, 만약에 이것을 규정한다고 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발되는 배임죄 소송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배임죄에 대해서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어떤 논의가 되어 왔는지를 조금 더 챙겨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영교 위원** 하신다고 했습니다, 미소로.

○**박지원 위원** 법무부차관, 감사원도 마찬가지인 데요.

소위 서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해경 대변인, 그러니까 그 대변인의 진술에 의거하면 당시 해경에서는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 정권의 안성식 현 치안감,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된 현 해경의 기획조정관이 ‘아니다.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박지원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원에서는 감사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이러한 진술들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한테 말씀드리는 데 지금 현재 전 국정원 간부들, 제가 원장 할 때 이 간부들을 3년이 넘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홀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얘기한 것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지금 말씀하신 사건 내용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마찬가지로 감사원장께서도, 사무총장이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정보위원인데 지금 현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문제, 즉 국정원 인사 파동 그리고 서해 사건, 동해 사건의 조작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찰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감찰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두 분 다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이라며, 쌍방울 사건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서영교 위원**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온갖 검찰의 조작과 은폐, 회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 법사위에서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했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그때 추태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울산지검 내에서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은폐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구체적인 그 당시의, 술을 먹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수사했던 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구명 로비가 있었다, 그리고 용산과도 논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진술 협상 녹취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녹취를 틀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액수 얘기가 나오고요. 저 조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바로 밑에 있는 조 회장입니다. 조 회장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며 구명 관련한 이야기를, 당시 가장 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 나오기로는 ‘구명, 용산과도 논의했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문자에는 VIP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 광상도 의원이, 대장동 관련해서 50억은 광상도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쌍방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여기 이렇게…… 배상윤 씨가 이런 얘기 합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라고 하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녹취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서 대통령후보를 난도질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자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0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을 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법 이외에도 형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들의 개정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

랫동안 해 왔고 자본시장법, 형법의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가 2000만 명이 넘는데, 상장 주식회사는 2500개 정도가 되는데 항상 개인투자자들은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주주라든가 상장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권리를 전혀 찾아 주려고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제1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해 주시고 결론을 맺어 주셔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형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시 해결하면 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제1(8인)	◎김용민 박군택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5)
	장동혁 곽규택 주진우	국민의 힘(3)
법안심사제2(11인)	김용민 김기표 박지원 박희승 이성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6)
	◎장동혁 송석준 신동욱 조배숙	국민의 힘(4)
	박은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예산결산기금심사(8인)	◎장경태 김기표 박군택 박희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5)
	송석준 장동혁 주진우	국민의 힘(3)
청원심사(6인)	◎전현희 박지원 박희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4)
	박준태 조배숙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회임

###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이춘석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 ○출장 위원(1인)

박희승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최재해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이두희  
법제처  
처장 이완규

### ○법원측 참석자

법원 행정처  
처장 천대엽

**【보고사항】**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59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	2025. 6. 21.
부령	제1098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	2025. 6. 4.
	제109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	2025. 6. 10.
	제110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	2025. 6. 21.